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	**보도참고자료**	희망의 대한민국 http//www.motie.go.kr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문의 : 김종철 전력진흥과장, 양정화 사무관(044-203-5263), 김창연 주무관(5271)		

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한 「전기사업법 개정안」 국회 통과

- 「베스팅계약 제도」 도입 ☞ 전력도매가격 안정화 및 발전사 효율 개선 기대
- 「지능형수요시장」 개설 ☞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이 동등하게 전력시장 거래

□ 현행 전력시장에 **'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'**(일명 '베스팅계약') 도입과 지능형 수요시장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**전기사업법 개정안**(산업위 대안)이 **오늘(4. 29.) 국회 본회의를 통과**했음.

○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이번 '전기사업법' 개정을 통해 **전력거래가격의 안정성**을 강화하고 **발전부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**와 **'전력시장의 정상화'를 위한 기반을 마련**한 것으로 평가하고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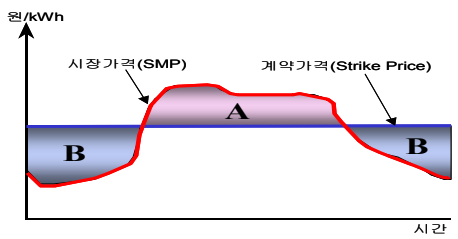
○ 앞으로 **'박근혜정부'의 '전력수급 안정화' 국정과제**가 본격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**'하위법령'**과 **'후속정책'**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.

< 전기사업법 개정안(산업위 대안) 주요 내용>

대표발의 의원	주요 내용
김한표 의원	· **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 도입** → (추가: 산업위)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전력구매자에 **댐 주변지역 지원 출연금 감소액 보전의무 부과** · **전력거래 상한가격제도 도입**
전하진 의원	· **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 근거 마련** → **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이 동등하게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「지능형 수요시장」 조성**
강창일 의원	· **법정형 정비 (벌금형 현실화, 법정형 편차 조정)**
여상규 의원 부좌현 의원	· **전기사업 허가 결격사유 정비(민법 개정내용 반영)**

□ **(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)** 사전에 정부가 승인한 **가격·물량·기간 등 계약조건**에 따라 **발전사와 전력구매자(판매사 등)가 거래**하고 **계약가격과 시장가격간의 차액을 정산**하는 제도임.

< 차액계약의 개념 >



- 계약발전 물량은 시장가격(SMP)과 관계없이 **계약가격(Strike Price)으로 정산**
- A의 경우 : SMP > 계약가격
 ☞ 발전 → 판매회사에 차액(A)지급
- B의 경우 : SMP < 계약가격
 ☞ 판매 → 발전회사에 차액(B)지급

○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도매시장은 대부분의 해외 전력시장과 달리 **사실상 100% 현물거래**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**시장 외부충격과 환경변화**에 따라 **전력시장가격(SMP)이 크게 변동**하고 있음.

* SMP(System Marginal Price; **계통한계가격**): 시간대별로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료비가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되는데, 최종 투입되는 발전기의 연료비가 전력시장가격이 됨.

○ 이러한 **전력시장의 취약성**은 안정적인 거래를 지향하는 「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」를 통해 **개선할 수 있을 것**으로 기대함.

○ 또한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민간의 저원가 발전기(부생·석탄)의 초과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 중인 **「정산조정계수」를 이 제도로 대체**함으로써, **발전사의 효율개선 성과를 반영하는 '인센티브'를 기반으로 초과이윤을 객관적으로 회수**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.

* 정산조정계수: 원자력, 석탄 등 저원가 발전기의 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재무균형을 감안,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일부만 지급(일종의 할인율)

□ **(정산상한가격제도) LNG·유류 발전기**의 시장거래가격 상한을 미리 정함으로써 **전력도매요금(SMP) 급등**과 **전력구입비의 과도한 증가**로 인한 **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제한**할 것으로 기대함.

○ 이 제도는 '13년 3월부터 '전력시장운영규칙'에 근거해 운영 중이나,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**법적 기반을 강화하고,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**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.

□ **(지능형 수요시장) 소비자가 전기를 아낀 것(수요자원)**을 **발전자원과 동등**하게 **전력시장에서 되팔 수 있는 근거**가 마련됐음.

○ 현재는 정부예산(전력기반기금)을 통해 수요 감축량을 보상하고 있으나, **전력시장 메커니즘**을 활용해 **수요관리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**하는 한편,

○ 전력 **공급비용을 절감**함으로써 **전기요금 인상을 억제**하고, 전력 **수급 안정화에도 기여**하며 **새로운 전력서비스시장을 조성**해 양질의 **일자리를 창출**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
□ 동 개정 법률안은 **11월쯤 발효될 전망**이며,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**하위법령 마련과 관련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** 하겠음.

OPEN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양정화 사무관(☎ 044-203-5263), 김창연 주무관(☎ 5271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